

[별지 제7호서식의(가)]

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서(규칙 제14조제3항관련)

투표구명	선거인명부 등재번호	성 명	수 정 내 용		수정사유	비고
			수정전	수정후		

- 주 : 1. 수정사유란은 이의신청·불복신청등에 대한 결정, 오기, 누락, 이중등재, 사망, 선거권이 없는 자등으로 기재한다.
2. 선거인명부에 누락되었던 자가 "세대주"인 때에는 비고란에 "세"라고 기재한다.